

의안번호	제 506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
조례 폐지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5월 27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의안 번호	50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5월 27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해 왔으나,
-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“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”과 “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”에 맞추어 이 조례 폐지

2. 주요내용 : 조례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-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생략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하수법 시행령

제40조(지하수관리위원회) ① 삭제 <2009.4.30>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5.11.30>

1.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·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③ 생략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